

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 (제83조의10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근거조항	행정처분기준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경우	영 제60조의9제1항제1호	자격취소
2.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.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나.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다. 1회 대여한 경우	영 제60조의9제1항제2호	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

비고: 제2호다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.